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지침

2023. 1. 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관계 법령”이라 총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총칭한다) 및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 적합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간결하게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공개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이 산학협력단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산학협력단장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가. 경영조직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 관리조직) ① 산학협력단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관리조직이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하여 산학협력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산학협력단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학협력단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학협력단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산학협력단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관계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산학협력단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지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과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관계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산학협력단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본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의 근로자
-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2명의 부서장
- ④ 근로자대표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구성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기타 위원회 진행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 재해 발생 시
3.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4.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 시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근로자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당연직으로써 반드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5. 그 밖의 토의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 보장)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참고인 출석 등) ① 양측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상대측 위원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상대측 위원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산학협력단과 근로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연도 말일 또는 차년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0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산학협력단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채용 시 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제26조(기록·보존) 산학협력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제27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① 산학협력단은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연도 말일 또는 차년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9조(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허가없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리,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검사 등)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이하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①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34조(안전보건점검)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 등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보건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 1항의 정기안전점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근로자는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전 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 ⑥ 산학협력단은 점검결과 유해·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제35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 제4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시기 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7조(작업환경측정) ① 산학협력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시행 전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무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③ 산학협력단은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게시판 내 게재
 2.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3. 기타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④ 산학협력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산학협력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를 제외한 보호구에 대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산학협력단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입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1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산학협력단은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 ② 산학협력단은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비상조치계획) ① 산학협력단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제45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산학협력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산학협력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산학협력단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47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4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49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한다.

제50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때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② 산학협력단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관리감독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근로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⑤ 안전보건게시판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산학협력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위험성평가 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산학협력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5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산학협력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8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산학협력단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방안 및 개선조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모든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60조(문서보존연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1조(개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관계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의 개정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2023. 1. 3 제정)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보건 관리조직(제6조 관련)

